

일본 對韓 수출규제의 주요 내용 및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오세진 (ohsejin@kdb.co.kr)

- ◆ 일본은 한일 양국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명분으로 7.1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관리제도 운용 강화 등 수출규제조치 발표
- ◆ 일본이 과점하고 있는 첨단 기계장비 및 소재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수출을 규제한다면 경쟁도가 높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차질 뿐 아니라 글로벌경쟁력도 약화될 가능성

□ 일본은 한일 양국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명분으로 7.1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관리제도 운용 강화 등 수출규제조치 발표

- 플루오르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산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기존의 '포괄수출 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 변경(7.4일 실시)
 - 위 3가지 품목은 7.4일부터 수출 계약시마다 매번 승인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90일이나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기간 연장 가능
 - 또한, 8월부터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
 -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 편입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포괄수출 허가제를 시행하였으나, 제외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부품 등 전략물자에 대해 개별허가 필요
- * 일본은 백색국가를 선정하여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화학무기, 첨단소재, 전자제품 등에 대해 수출우대 제도 시행중

<참고> 백색국가 현황

북미(캐나다, 미국), 남미(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아시아(대한민국), 유럽(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웨덴,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헝가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불가리아)

- 일본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전략물자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판단
 - * 아베신조 총리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고 언급(7.4일)

‘대한민국향 수출관리 운용 관련 재검토’ 주요 내용(일본 경제산업성, 7.1일)

구분		내용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배경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관계 부처의 검토 결과, <u>한일 양국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판단으로</u> ,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있어 엄격한 제도 운용이 필요함
규제내용	1.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관리 카테고리 검토	7.1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국가 카테고리 검토 관련, 「외환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에 따른 ‘제3의 국가(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할 지에 관한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 (7.24일 종료 예정)
	2. 특정 품목에 대한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	7.4일부터 플루오르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대한민국 수출과 이에 관련한 제조기술 이전에 대하여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개별수출허가 신청을 통해 수출심사를 실시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NH투자증권

□ 향후 일본의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확대 및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 일본은 「한국 수출 규제 사전평가서」에서 해당 조치를 금전적 가치화 하는 것은 곤란하며, 우리나라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해당 규제를 지속할 것임을 명시

<참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사전평가서」 일부 내용

금번 조치는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출에 대한 수출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한 조치이며 비규제 수단은 불가. 일본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함으로써 외환법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금전가치화 하는 것은 곤란하며,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여 외환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일본이 다해야 하는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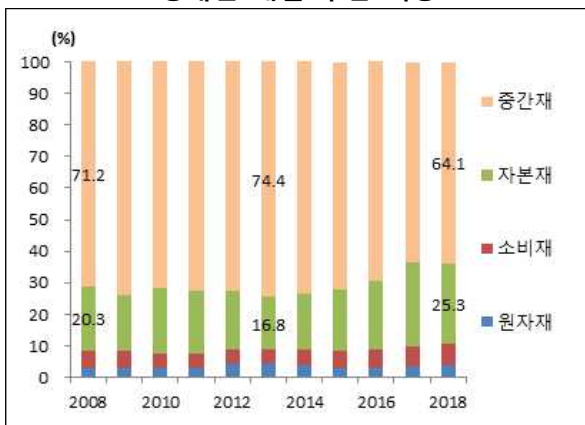
*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7.1일), 이베스트투자증권

- 금번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세가지 품목을 고려하면 다음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판단
 - 첫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내에 대체하기 힘든 품목
 - 둘째, 수출 규제로 한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타격이 큰 품목
 - 셋째,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일본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품목
- 따라서 향후 수출규제 대상 품목도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핵심품목 위주로 확대 예상
 - * 반도체 산업의 경우 소재 및 장비 시장에서 도쿄일렉트론, 히타치, 신에츠, Toppan, Tosoh 등 상당수 일본기업들이 과점체제를 형성

□ 국내 기업은 핵심소재 조달 차질로 인해 당분간 정상적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이에따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

-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중간재·자본재 수입비중이 높아 일본으로부터 소재 조달이 어려워지면 대안 마련시 까지는 생산차질이 불가피
 - 금번 일본의 조치로 삼성전자는 올해 예정되어있던 평택 반도체공장 설비투자를 내년으로 이연하기로 하였으며, SK하이닉스는 감산에 돌입
 - 한·일 기업간 첨단기술 협력은 영업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사전과약이 어려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선제적 대응이 어려움
-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 될수록 국내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과 생산차질이 얼마나 확대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 일본이 과점하고 있는 첨단 기계장비 및 소재 부품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수출을 규제한다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 한은 총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경제성장률도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7.23일)

형태별 대일 수입 비중



자료 : 무역협회

한은의 '19년 경제전망 하향조정 내용

(단위 : %)

	'19.4월	'19.7월	조정폭
GDP성장률	2.5	2.2	△0.3
설비투자	0.4	△5.5	△5.9
수출(통관)	△3.1	△7.6	△4.5

자료 : 한국은행